

「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7. 2. 20(월) 임영순의원외 5인
- 회부일자 : 2017. 3. 14(화)
- 상정일자 : 2017. 3. 14(화) 제22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임영순의원)

- 조례 입법의 원칙에 맞게 관련 조문과 형식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류지웅)

- 본 조례안은 조례 입법의 원칙에 맞게 관련 조문과 형식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여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,
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

조례안 1부.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) ①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매월 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.

② 의장은 의원이 의회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.

제3조(지급기준) 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(이하 “의정활동비 등”이라 한다)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정활동비: 별표 1

2. 월정수당: 별표 2

② 여비는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른다.

1. 국내여비: 별표 3

2. 국외여비: 별표 4

제4조(지급일 및 계산방법) ① 의정활동비 등은 매월 평창군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(이하 “지급일”이라 한다)에 지급한다.

②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날이 지급일 이후일 경우 합산하여 다음 달 지급일에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날일 경우에는 그 날에 지급한다.

③ 의정활동비 등은 의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에서 그 달의 재직일 수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각각 계산한다.

1. 임기가 개시되거나 그 직을 승계한 날
2. 그 직을 상실하는 날

제5조(환수) 의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날이 지급일 이후일 경우에는 이미 지급일에 지급한 의정활동비 등에서 그 직을 상실한 날 이후의 나머지 일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자체 없이 해당 의원에게 되돌려 받아야 한다.

제6조(준용) 의정활동비 등 및 여비의 지급절차 ·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의 예, 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 등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한 의정 활동비 등 및 여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의정활동비 지급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지급기준	의 정 활 동 비	
	의정자료수집·연구비	보조활동비
의원 1명	월 900,000원	월 200,000원

[별표 2]

월정수당 지급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지 급 기 준	월 정 수 당
의 원 1 명	월1,541,000원

[별표 3]

국내여비 지급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임	현지교통비 (1일마다)	숙박비 (1박마다)	식비 (1일마다)
평창군 의회 의원	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20,000	실비 (상한액: 서울특별시 70,000 광역시 60,000 그 밖의 지역은 50,000)	25,000

- 비고 : 1.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(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)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
2.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특실 정액을 말하며, 해당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3. 수로여행에 따른 운임의 정액은 주무관청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4.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 해야 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개정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[별표 4]

국외여비 지급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달러)

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임	등급	일비 (1일마다)	숙박비 (1밤마다)	식비 (1일마다)
의장 부의장	•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을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철도요금	•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을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선임	1등 정액	가 나 다 라	실비 (상한액)	35	223	107
	• 등급구별이 없을 경우에는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액	• 등급구별이 없을 경우에는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액				35	160	78
의원	•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실비액	•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실비액	2등 정액	가 나 다 라	35	130	58	49
						35	85	49
				비 액	30	176	81	44
						30	137	59
				가 나 다 라	30	106	44	37
						30	81	37

비고 : 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.

- 가. 가등급: 도쿄, 뉴욕, 런던, 로스엔젤레스, 모스크바, 샌프란시스코, 워싱턴
D.C., 파리, 홍콩, 제네바, 싱가포르
- 나. 나등급
- 1) 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: 타이완, 베이징, 인도, 일본, 카자흐스탄, 파푸아뉴기니, 사모아, 쿡제도
 - 2) 남·북아메리카주: 멕시코, 미국, 브라질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키츠네비스, 아르헨티나, 아이티, 앤티가바부다, 자메이카, 캐나다
 - 3) 유럽주: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사이프러스, 아이슬란드, 영국, 오스트리아, 우크라이나, 이탈리아, 포르투갈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

- 4) 중동·아프리카주: 가봉, 남아프리카공화국, 리비아, 수단, 남수단, 바레인, 사우디아라비아, 세이셸, 아랍에미리트, 앙골라, 오만, 우간다, 이스라엘, 이집트, 에티오피아, 적도기니, 카타르, 코트디부아르, 콩고민주공화국, 쿠웨이트

다. 다등급

- 1) 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: 뉴질랜드, 마셜군도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브루나이, 아제르바이잔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네시아, 우즈베키스탄, 중국, 키르기즈공화국, 타이, 터키, 타지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파키스탄, 니우에
- 2) 남·북아메리카주: 가이아나, 도미니카공화국, 바베이도스, 베네수엘라, 벨리즈,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, 우루과이, 칠레, 코스타리카, 트리니다드 토바고, 파나마
- 3) 유럽주: 라트비아, 루마니아, 리투아니아, 불가리아, 아일랜드, 세르비아, 몬테네그로, 슬로베니아, 슬로바키아, 체코, 폴란드
- 4) 중동·아프리카주: 가나, 기니, 나이지리아, 니제르, 라이베리아, 모로코, 모리셔스, 모잠비크, 보츠와나, 부르키나파소, 상투메프린시페, 세네갈, 스와질란드, 시에라리온, 아프가니스탄, 알제리, 요르단, 이라크, 잠비아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카메룬, 케냐, 탄자니아

라. 라등급

- 1) 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: 네팔, 동티모르, 라오스, 미크로네시아, 몽골, 미얀마, 베트남, 스리랑카, 캄보디아, 피지, 필리핀, 통가
- 2) 남·북아메리카주: 과테말라, 니カラ과, 볼리비아, 수리남, 에콰도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콜롬비아, 파라과이, 페루
- 3) 유럽주: 마케도니아, 몰도바,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, 벨라루스, 알바니아, 에스토니아, 크로아티아
- 4) 중동·아프리카주: 감비아, 기니비사우, 나미비아, 레바논, 레소토, 르완다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말리, 모리타니, 소말리아, 예멘, 이란, 짐바브웨, 튀니지

2.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.